



제 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화예술용역 관련 연습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 >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18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8. 23.

다. 회 부 일 : 2023. 8.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공연 등 문화예술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과 같은 연습 기간이 필수적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 기간에서 연습 기간을 제외할 경우 현실적으로 9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습기간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4제2항제2호).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계약 기간을 명시할 때 문화예술 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습 기간을 계약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제2항제2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생략)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 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②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계약 기간</u> ·갱신·변경 및 해지 에 관한 사항	2. <u>계약 기간(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준비 기간, 기 획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습 기간을 포함한다)</u>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 제4조의4¹⁾는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에게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토록 의무화하며,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금액,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등을 문화예술용역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사항 중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준비·기획 기간 등 연습 기간’도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예술인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 기간을 보다 장기화하려는 취지임.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여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요건의 핵심 요소로서, 2020년 12월 「고용보험법」에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
- 1)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고용보험 적용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²⁾가 시행되었고, 「고용보험법」³⁾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28,108명인 반면 구직급여 수급자는 4,462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이 많은 예술 활동 특성상 9개월 이상 구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예술인이 많지 않을 수 있고, 예술 활동 연습기간이 길어질 경우 예술인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일 수

2)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였으며, 다수의 활동이 프리랜서 형태로써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특례를 규정하여 예술인이 실업 기간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④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사업주가 체결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의 월평균 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만원 이상일 것

있음을 감안할 때,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연예술 분야는 공연 실연 등 연습 일정을 포함하여 계약이 가능한 경우⁴⁾도 있으나 미술, 문학 등 그 외의 분야⁵⁾의 경우 명확한 연습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화예술용역계약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계약기간에 연습 기간이 포함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둘째, 보수가 일정한 상황에서 계약 기간에 연습 기간을 포함하여 그 기간이 길어지면 월 평균 보수액이 감소하게 되어⁶⁾ 월 평균 보수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구직급여 기준액⁷⁾이 줄어들게 되므로 일부 예술

4) 참고로, 현재 공연 분야 출연 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는 연습 일정을 명시하고 있음.

5) 미술·문학 분야의 경우 작가의 구상·기획 및 소재 발굴 등은 명확히 그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6) 이 경우 월 평균보수 50만원 이상으로 규정된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예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만원 이상일 것

7) 「고용보험법」 제77조의3(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 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술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예술인은 제외한

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용역의 계약 기간에 연습기간을 포함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문화예술용역의 유형 및 계약 방법 등이 매우 다양함을 고려할 때 각 문화예술용역의 특성에 맞게 연습 기간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되, 그 사항의 전문성·기술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정하도록 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반면, 고용노동부는 계약 기간에 연습 기간 등을 포함할 경우 동일 보수 대비 계약 기간이 길어져 예술인 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구직급여액이 적어지는 등 오히려 일부 예술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79

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④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